

2025년 채용형 인턴(기술·행정) 채용 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으로 국민생활안전을 선도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채용직급	채용분야	세부분야 ¹⁾	채용인원	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형 인턴	기술분야	· 일반	37	인턴 근무기간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세부분야 성적우수자 70% 이상 전환
		· 지역인재(울산·경남) ²⁾	18	
	행정분야	· 회계·인사	5	
합계			60	

1) 채용 세부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세부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다른 세부분야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2) 지역인재(울산·경남)에 관한 참고자료는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에서 확인 가능

2. 근무조건

채용직급	세부분야	근로시간	근무기간	보수(月)	근무장소 ¹⁾
채용형 인턴	기술분야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25. 7. 2. ~ '25. 10. 2.	2,619천 원 ²⁾	전국 지역 사무소
	행정분야		'25. 7. 2. ~ '25. 10. 2.		공단 본부 또는 승강기안전기술원

1)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며 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2) 세금, 4대 보험 등 공제 전 지급총액으로 공단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따르며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공통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붙임 8 참조)
- 입사지원분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2025. 7. 2.)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25. 8. 1.) 승인함

<개별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세부분야	개별 응시자격	담당업무 ¹⁾
기술 분야	일반	접수일 기준 「승강기 기사」 자격 보유자	기술분야 (승강기 법정검사) 업무 등
	지역인재 (울산·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일 기준 「승강기 기사」 자격 보유자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울산·경남 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행정 분야	회계 · 인사	접수일 기준 공공기관 ²⁾ 회계 또는 인사 업무 경력 1년 이상 ³⁾	행정분야 (회계 · 인사 업무 등)

1) NCS 기반 직무기술서(붙임 3) 참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 필수)

3) 회계 또는 인사 어느 한쪽의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함(ex. 회계 6개월 + 인사 6개월 불인정)

※ 경력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관,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미제출시 관련 경력사항 불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기간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복되는 기간만 입력 요망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5.05.07.)을 최종일로 함

4. 가산점

구분	우대 대상	대상전형 필기, 면접	가산점 ¹⁾ (만점 기준)	부여기준
법정	장애인	○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5% 또는 10%	관련 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의사상자	○	5% 또는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전문야	○	3%, 2%,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 1급: 3%, 2급: 2%, 3급: 1% (중복불가)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저소득층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	5%	행정분야 지원자 중 울산·경남지역 이전 지역인재 [붙임1 참조]

1)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상세 내용은 '[붙임4] 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제 출 서 류
서류전형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별 응시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술분야-일반) 승강기기사자격증 - (기술분야-지역인재) 승강기기사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지역인재를 확인하고자 함이기에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 (행정) 공공기관 회계 또는 인사 업무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최종학력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합격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력 즐업증명서 등 안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응시 전 제출

6. 전형절차

전형 단계	주요 내용	일정
① 공고	• 홈페이지, 잡알리오 등	'25. 4. 23.(수) ~ 5. 7.(수)
② 접수	• 접수처: 온라인 접수	'25. 4. 30.(수) ~ 5. 7.(수)
③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5. 15.(목)
④ 필기전형	• 필기전형	'25. 5. 24.(토)
⑤ 면접전형	• 집단면접	'25. 6. 10.(화)~6. 12.(목)
⑥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25. 6. 18.(수)
	• 이의신청 접수	'25. 6. 18.(수) ~7. 2.(수)
⑦ 임용	• 임용일(예정)	'25. 7. 2.(수)

*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 '25. 8. 1.까지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① 공고 · 접수

- (채용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 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②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합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합격발표) ‘25. 5. 15.(목)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필기전형 응시 전 제출
※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필기 ·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③ 필기전형

- (시험일자) '25. 5.24.(토)
- (시험장소) 별도 안내 예정
- (시험구성)

교 시	채용분야	시 험 내 용	시 험 시간	배 점
1교시	공통	·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승강기), 직업윤리	30분	적·부
2교시	기술분야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승강기), 직업윤리	60분	100점
	행정분야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60분	100점

- (합격자 결정)

- ① 1교시 부적합자(적·부 판정)를 제외 한 후
- ② 가산점*을 포함한 2교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 가산점 부여기준: 필기전형 2교시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는 세부분야 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전원 면접평가 응시기회 부여

- (합격발표) '25. 6. 9.(월) 전 안내 예정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채용 분야별 어느 한 성(性)의 필기전형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필기전형의 2교시 점수가 가산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중 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④ 면접전형

- (전형일자) '25. 6. 10. (화) ~ 6. 12. (목) (예정)
- (전형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 가산점 부여기준: 면접전형 평가 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우선 합격하며, 그 후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발표) ‘25. 6. 18. (수)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 (이의신청)
 -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25. 6. 18. (수) ~7. 2.(수)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⑥ 채용형 인턴 임용

- (채용형 인턴 임용일자) ‘25. 7. 2. (수) (예정)
- (채용형 인턴의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임용일 ~ ‘25. 8. 1. (금)
 - 예비합격자는 채용 세부 분야별로 운영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이후 전형의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성별 수집 예정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 사항인 성별, 가족사항, 학력 등 일체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한 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8.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대상자: 2025년 채용형 인턴(기술·행정)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 기간 산정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9. 장애인 편의지원

- 내용: 채용전형 전반(시험장 배정, 대리마킹 등)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 유선전화(055-751-0856) 등
 -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현장 지원요청도 가능함
- 신청기간: 채용전형 기간 내

10. 기타사항

- 제출완료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수정불가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인사규정 시행규칙」제18조를 적용해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 서류는 「5. 제출서류」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2)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
-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3. NCS 직무 설명자료
 4. 가산점 부여기준
 5.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6. 이의신청 양식(서식)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8. 채용 결격사유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

1.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우리 공단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적용 예시

울산·경남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O
울산·경남 지역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대상 O
울산·경남 지역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X
타 지역 고교 졸업, 울산·경남 지역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대상 X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함

2. 이전지역 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가) 「고등교육법」 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가)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라) 「독학에 관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붙임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18.5, 기획재정부)

2. 내용

-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임용
시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및 전환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시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시험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붙임 3] NCS 직무 설명자료

승강기 법정검사_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5. 기계	05. 기계장치설치	01. 기계장비설치·정비	승강기 법정검사 (공단 자체개발)
채용분야	채용형 인턴 - 기술분야			
공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 · 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책무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법정검사(설치 · 정기 · 수시 · 정밀안전 검사) 실시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 검사준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의 이해, 검사유형(설치, 정기, 수시, 정밀안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승강기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기계) 해석, 승강기 조작 매뉴얼, 승강기 이용자 준수 사항, 검사 측정 장비 종류 및 사용 매뉴얼 등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법정검사)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 능력,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 능력, 검사정보시스템(전산) 사용 능력, 기계실 · 승강로 · 승강장 · 페트 등 구조파악 및 검사능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 기계) 해석 능력, 검사 측정 장비 사용 능력,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소통 능력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검사기준 및 매뉴얼을 준수하는 태도, 공정한 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 주의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기사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승강기),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행정(회계 · 인사)_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3.재무·회계	01.재무	02.자금
			02.회계	01.회계·감사
		02.총무·인사	03.인사·조직	01.인사
채용분야	채용형 인턴 – 행정분야			
공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 책무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 공단의 재무건정성과 회계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표 및 자금관리, 회계 정보시스템(ERP) 운영, 재무제표 작성, 부가가치세,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 ○ (인사)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인력계획 수립, 채용, 성과 및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 예산계획을 분석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 ○ (인사) 검사·인증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채용, 인사관리,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 공공기관 회계기준 및 정부회계 규정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처리 지식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에 대한 이해 ○ (인사) 공공기관 인사·채용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균형인사, 채용지침 등)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 공공기관 인사 관련 법률 및 규정 공단 내 부서 및 직무별 인력운영의 특성 파악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 자금운용일정표 작성, 자금 지출프로그램(CMS) 운영, 증빙서류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정보 활용, 장부마감, 결산조정 회계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사업·기타), 국세·지방세 신고에 대한 이해 각종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관련 데이터 정리 능력 ○ (인사) 공공기관 인사·채용 지침에 따른 채용 운영 능력 성과평가 직원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능력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 복무·노무관리 기술 공단 내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춘 인력 운영 실무 능력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회계) 정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재정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공공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윤리의식과 꼼꼼함을 갖추고 일한다. ○ (인사)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한다.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세무, 전산회계,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붙임 4] 가산점 부여기준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가산점	근 거
국가 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10%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5%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등,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5%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구 분	가산점	근 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7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	
장애인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의사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9호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0호
다문화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1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을 갖춘 사람	1급 3%, 2급 2%, 3급 1%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
울산 또는 경남 이전지역인재(행정분야 입사지원자)	5%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공자로서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 채용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있음 없음)

→ “있음”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관계

본인과의 관계	친인척 직원 성명	친인척 직원 소속	비고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함 생각하지 않음)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_____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_____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이의신청 양식(서식)

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7일
신청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채용시험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한국어

첨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불임 8]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
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